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를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자에서 제외〉
■ 박군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61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23.
3. 회 부 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법」이 의결(2014년 2월 28일)되어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 제7조제1항에서 국회의장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나 15년 이상 「감사원법」 제20조의 감찰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②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③ 같은 조 제5항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u>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u> <신설>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u>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1명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을-----요청하여야 한다.</u> 1.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2. 15년 이상 「감사원법」 제20조의 감찰 업무를 수행한 사람
<신설>	

현행	개정안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요청서를----- -1명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감찰관후보자 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가. 「특별감찰관법」의 제정 및 운영 현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고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제19대국회에서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2014. 2. 8.)되어 2014. 6. 19.부터 시행되고 있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정무직공무원이지만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짐. 법 시행 이후 2015. 3. 27.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은 공석상태로 있음.

나. 검토의견

현행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서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제안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¹⁾을 거친 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특별감찰관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및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이해충돌 방지 효과, 특별감찰관의 중립성 보장 측면,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의 정치적 균형성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57

1) 국회의장은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의안번호 1914104, 2015. 3. 3)’,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의안번호 1914105, 2015. 3. 3)’,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의안번호 1914106, 2015. 3. 3)’을 제안하고,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함[의안정보시스템, 국회의원회록 제331회국회 제8차(2015. 3. 3)]